

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인용법령 명칭을 정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띄어쓰기 정정(안 제2조, 제4조, 제9조)
 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→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
  - 공직자윤리법 → 「공직자윤리법」
  -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
- 약칭 정의(안 제3조)
  - 도 →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- 하기 위해 → 위해
- 재직중 → 재직 중
- 사고가 있을 때 →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- 각호 → 각 호
- 관하여 필요한 → 필요한

## 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 명칭을 정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. 끝.